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5월 9일,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5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8.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9.)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만희의원)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23년 삭제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감면해 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현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이라 함)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 취락용지,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상공업 용지 등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직접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음.

개정안은 해당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재개발사업 사용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당초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등의 재개발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였으나, 2023년 개정(2023.03.14. 일부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해당 특례가 삭제되었는데, 개정안은 일몰이 종료된 재산세 특례를 다시 신설하려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등의 재개발사업으로서 농림수산 관련 연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업 관련 정책연구에 활용하고, 농어촌 취락용지, 상공업용지 등을 개발하여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등의 재개발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에 따른 일몰기한 연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재산세 감면 규정 재신설과 관련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담세력, 타 공사와의 조세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